

12.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890호 1999. 2. 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기술자격취득자로 하여금 등록 및 해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8조)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기술자
격증을 교부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취득”을 “취소”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
호·제4호를 삭제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